

2022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22회 정기총회 소집

2022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22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일 시 : 2022년 9월 29일 오후 2시
- ◇ 장 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
- ◇ 총회등록비 : 20,000원

주요 안건 및 행사

1. 회장 및 임원선출

- * 총회등록비를 낸 이에 한하여 결의권 및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 회칙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합니다.
- * 회장 선거를 위해 총회 등록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은 선거관리규정 3장에 근거하여 **8월 9일(화) 오후 1~4시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서류를 총동문회 사무국(학교 내 총동문회 사무실)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장 입후보등록절차]

제5조 (선거 공고) 총회는 정기총회 소집 및 선거 후보자 등록일정을 (회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입후보 서류) 회장에 출마하려는 이는 선관위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력서(사진 첨부)
- ② 추천서(본회 양식)
- ③ 회비 납부 확인서(본회 양식)
- ④ 입후보 등록비
- ⑤ 출마 인사 및 정책 공약

제7조 (추천서) 동문추천서는 본회 양식에 따라 동문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한다.(단 추천인의 경우 선거권 유무와 관계없이 동문으로 한다)

제8조 (등록비) 입후보자의 등록비는 20,000,000원으로 한다.

2. 회칙개정

회칙개정을 원하는 동문들은 회칙 8장 25조에 근거하여 **8월 9일(화) 오후 1~4시까지** 회칙개

정안을 총동문회 사무국(학교 내 총동문회 사무실)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회칙개정 관련조항]

제25조 본 회칙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하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은 1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회동문회와 여동문회는 3개 이상 동문회 총회의 의결로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총동문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1호 내지 3호에 의한 개정안은 총회 개회 50일 전에 총동문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하며 개정안에 제안될 경우 총동문회는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5. 회칙 개정에 관한 공고는 정기총회 소집공고와 함께 한다.

3. 모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상 시상

모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총동문회 임원회, 각연회 동문회 임원회, 여동문회)와 개인(동문 50인 이상 연서명)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이유서, 공적서, 단체의 경우 추천을 위한 임원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무국(총동문회 사무실)으로 **8월 30일(월) 오후 1~4시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9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기우

감리교신학대학교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각 동기 졸업생의 모임은 동창회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교를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협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31번지 감리교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경조 및 상문
3. 도서와 간행물의 출판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의 자격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은 감리교신학대학교와 전신 1905년에 설립된 협성신학교, 1930년에 개칭된 감리교신학교, 1943년에 개칭된 감리교교사수련소, 1946년 신학교 본과 및 전수과 졸업생, 1959년 입학생 이후부터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 신학대학원 졸업생, 선교대학원 졸업생, 목회신학대학원 졸업생, 박사원 졸업생, 그리고 신학원 및 학사원 졸업생, 명예졸업자로 한다.

제7조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으나 중퇴한 이로 한다.

제8조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제9조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발언권, 의결권이 있으며 회비부담과 집회 참석 및 사업에 동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단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피선거권과 총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의 선거권, 발언권, 의결권은 유보한다.

제10조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제 3 장 임원과 부서

제11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 1인, 회장 1인, 부회장 14인(각 연회동문회회장 12인, 여동문회회장, Mdiv 동문회장), 총무 8인(총무 1인, 섭외총무 1인, 해외총무 1인, 모교교수 중에서 1인, M.Div 중 1인, 여동문 중 1인, 기독교교육학과 동문회장, 종교철학과 동문회장), 서기 및 부서기 각 1인, 회계 및 부회계 각 1인, 각 부 부장 및 차장, 감사 2인. 부흥단, 후원회.

제12조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 회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직무대행은 ①입학 학번선임자 ②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총무 : 총무는 본 회 모든 사업을 관장한다.
 섭외총무 : 섭외를 담당한다.
 협동총무(해외) : 해외 동문과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협동총무(교수) : 모교와 총동문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협동총무(M.Div) : 일반대학 출신으로 대학원을 마친 졸업생과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협동총무(여동문) : 여동문과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협동총무(기독교교육학과 동문회장) : 기독교교육학과 동문들과의 연대업무를 담당한다.
 협동총무(종교철학과 동문회장) : 종교철학과 동문들과의 연대업무를 담당한다.
4. 서기 : 본 회의 공문 수발 및 모든 회무 기록을 담당한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한다.
5. 회계 : 본 회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한다.
6. 기획조직부 : 동문회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연회 및 학과별 동문회, 기별 동기회 등의 조직과 연결 업무를 한다.
7. 목회지원부 : 목회정보 교환 및 동문들의 목회진로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
8. 신학연구부 : 감리교신학 정립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한다.
9. 대외협력부 : 동문 중 비목회자들의 연결 및 지원 사업을 한다.
10. 홍보출판부 : 동문회보 및 제반 출판, 홍보 업무를 한다.
11. 모교사업부 : 모교의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한다.
12. 선교부 : 해외와 국내 선교에 관해 연구, 시행 한다.
13. 사회부 : 사회선교를 담당한다.
14. 여성부 : 여동문에 관한 연결 업무를 한다.
15. 문화사업부 : 동문회의 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한다.
16. 회원친교부 : 회원 간의 친교, 경조, 유대를 위한 사업을 한다.
17. 장학사업부 : 모교를 위한 장학기금 모금과 장학사업을 한다.
18. 정보통신부 : 총동문회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통신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19. 복지부 :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한다.
20. 환경부 : 환경문제 등 제반에 관해 연구, 시행 한다.
21. 농어촌부 : 농어촌 동문들과의 연결 및 지원사업을 한다.
22. 찬양부 : 찬양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다.
23. 부흥단
24. 후원회
23. 감사 :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

제 4 장 회 의

제13조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가 있다.

-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며, 공고 후 출석회원으로 개최한다. 임원선출,

임원보고, 사업심사, 예산심의 및 본회 회칙을 개정한다. 단 일시와 장소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부의 된 안건을 처리하며 그 소집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본 회 정회원 100명 이상이 서명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 3) 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소집을 요청할 경우.
 - 4)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제13조 2항 2, 3의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3. 임원회의 : 본회는 총회가 닫힌 동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두되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임원회의 직무 : 본회는 총회가 닫혀 있고 임시총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거나 곤란할 때 혹은 사업의 긴박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처리한다. 또 본 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2) 임원회의 구성 :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감사, 각 부장 및 차장으로 조직하며 필요한 경우 각 동교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14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는 공영제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으로 정한다.
2. 부회장 : 각 연회 동문회장과 여동문회장이 당연직으로 취임한다.
3. 기타 임원은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되 전형위원은 총회에서 전형직 회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회장의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해당 동문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선임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회장 중 1인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회장 직무대행은 ①입학 학번선임자, ②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7조 본 회의는 직전회장과 현직회장을 모교의 이사로 파송한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독지가 및 교회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매년 모교를 졸업하고 본 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신입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입회비의 수납은 모교 당국의 협조를 얻어 최종학기의 등록금에 포함하여 일괄 수납하도록 한다.

제20조 본회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총회 등록비 등은 매년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장 동문회 및 지회

제22조 동문회는 기별 동문으로 구성하되 상호간의 친교, 연구, 장학사업 등을 추진한다.

제23조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와 외국 주재 동문들을 위하여 지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회는 본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단, 외국의 경우는 국가 단위로, 미국의 경우는 지역 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

제24조 동문회나 지회는 조직 및 사업에 관하여 본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25조 본 회칙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하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원은 1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연회동문회와 여동문회는 3개 이상 동문회 총회의 의결로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총동문회는 임원회의 의결로 회칙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1호 내지 3호에 의한 개정안은 총회 개회 50일 전에 총동문회 사무국에 접수해야 하며 개정안에 제안될 경우 총동문회는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5. 회칙 개정에 관한 공고는 정기총회 소집공고와 함께 한다.

부 칙

1. (시행일)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이나 별도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정: 1982.10. 4
일부개정: 1991.10.15
일부개정: 1992.12. 1
일부개정: 1995.10.21
일부개정: 1996.10.28
일부개정: 2000. 9.18
일부개정: 2002. 9.27
일부개정: 2004. 9.24
일부개정: 2006. 9.19
일부개정: 2008. 9.23
일부개정: 2012. 9. 5

감리교신학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공영제) 회장 선거는 공영제로 한다.

제2조 (선관위) 선거관리는 총동문회 임원회가 맡는다. 단,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확대 조직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3조 2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피선거권과 총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의 선거권, 발언권, 의결권은 유보한다. 이 조항의 적용은 후보자의 경우 등록일 기준,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선거인 명부작성) 피선거권 및 선거권자의 명부는 사무국에서 작성하여 선관위가 관리한다.

제 3 장 입후보 등록 절차

제5조 (선거 공고) 총회는 정기총회 소집 및 선거 후보자 등록일정을 (회보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 (입후보 서류) 회장에 출마하려는 이는 선관위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이력서(사진 첨부)
- ② 추천서(본회 양식)
- ③ 회비 납부 확인서(본회 양식)
- ④ 입후보 등록비
- ⑤ 출마 인사 및 정책 공약

제7조 (추천서) 동문추천서는 본회 양식에 따라 동문 50인 이상의 연명으로 한다.(단 추천인의 경우 선거권 유무와 관계없이 동문으로 한다)

제8조 (등록비) 입후보자의 등록비는 20,000,000원으로 한다.

제 4 장 선거 운동

제9조 (선거홍보물) 선거 홍보물은 선거관리기구에서 작성, 배포한다.

제10조 (개인 홍보물) 후보자 1인당 1회에 한해 개인유인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유인물 1부를 선거관리기구에 사전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정책발표회) 후보자 정책발표는 정기총회 시 투표에 앞서 1회 실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관리기구와 후보자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2조 (선거운동 금지) 신문광고 등 과도한 선거운동은 공영제 원칙에 따라 금지하며, 현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선거관리기구의 고발과 임원회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의 금지 시점은 선거 공고일 이후로 한다.

제 5 장 선 거

제13조 선거는 총회 회기 중 실시하며, 사무국에서 작성한 유권자 명단에 따라 선거권자를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 (참관인) 각 후보자는 참관인 1인을 추천하여,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도록 한다.

제15조 투표는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이름이 틀릴 경우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제16조 사무국에서 작성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무효처리한다.

제17조 후보자 중 다 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동수일 경우 ①입학 학번 선임인자, ②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제18조 단독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투표를 생략하고 당선을 선포할 수도 있다.

제 6 장 부 칙

제19조 입후보 등록일시까지 등록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선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후보자의 등록비중 총회 및 선거관리에 사용하고 남은 비용은 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

제21조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선거 관례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임원회에서 개정하며,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6. 9. 19